

2008. 05. 08(목)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4.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4. 29.

2. 개정이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직제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별표 1)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따름
- 다.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을 변경함(안 제5조제2호·제5호)
 -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라.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안 제5조제4호)
-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증빙자료 징구와 장기교육(1개월 이상)과정 사비 사용 후 정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마.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적용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7호)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직제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로 변경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실비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하여

-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7일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고 이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 현행조례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을 운임(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공무원여비 규정]

-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7.11.13]

-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9, 2007.11.13>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②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